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1호서식] <개정 2022. 5. 18.>

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국유림 무단 점유·사용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30일

신고인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	전화번호	

점유·사용 내역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면적(㎡)	용도	점유·사용 기간

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 무단 점유·사용 사실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관할 행정기관이 발급하거나 행한 처분으로서 국유림의 무단 점유·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관련 고지서를 포함합니다) 2. 국유림의 무단 점유·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항공사진 3.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종교용 시설부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4. 「농지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(농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 청 인	처 리 기 관
	산림청

신 청 서 ▶ 접 수

▼

현장조사
- 무단 점유·사용 현지조사(담당자 확인)
- 무단 점유·사용 실태확인(심사위원회)

▼

심사위원회 심사
- 대부계약 요건충족 여부검토 등(심사위원회)

▼

대부계약 가능 여부 통지